

##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### 1. 기술인력기준

#### 가. 기술인력의 자격

- 1) 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
- 2)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에서 해양학, 해양환경학, 환경공학, 해양환경공학, 해양미생물학, 해양식품공학,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
#### 나. 기술인력의 수

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2인 이상으로 하되, 1인은 2년 이상의 검사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2. 시설기준

검사시설은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「해양심층수공정시험방법」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3. 장비기준

#### 가. 일반분석 장비

- 1) 수소이온농도측정기[pH 미터를 말하며, 수온염분기록계(CTD)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]
- 2) 염분기록계 1대 이상[수온염분기록계(CTD)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]
- 3) 다음의 장치를 갖춘 청정시설로서 청정도(Clean Class) 1,000 이하의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청정시설
  - 가) 공기샤워(air shower)
  - 나) 양압기(陽壓機)
  - 다) 고성능필터(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) 이상의 에어필터를 갖춘 공기정화장치

#### 나. 미생물에 관한 장비

- 1) 배양기 3대 이상
- 2) 현미경(배율 1천배 이상) 1대 이상
- 3) 멸균기 1대 이상
- 4) 무균작업실함대 1대 이상

#### 다. 무기질에 관한 장비

- 1) 유도결합분광분석기(ICP-AES) 또는 유도결합질량분석기(ICP-MS) 1대 이상
- 2) 삭제 <2018. 12. 31.>
- 3) 분광분석기
- 4) 영양염(nutrient)자동분석기
- 5) 이온분석기(ion chromatography) 1대 이상

#### 라. 취수해역 조사에 관한 장비(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- 1) 수온염분기록계(CTD) 1대 이상
- 2) 반돈채수기(van Dorn 採水器: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) 또는 니스킨채수기(Niskin 採水器: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) 3개 이상

#### 마.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(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- 1)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1대 이상

- 2) 섬광계수기 1대 이상
- 3) 베타계수기 1대 이상